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-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

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상호교류·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력사항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.

1. 공공보건의료와 지역보건의료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자문
2.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대상 활동
3.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를 위한 관련 지식·정보공유에 대한 사항
4.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사항
5. 본 협약서 이외에 상호 관심사항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3조 보안

1.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2. 양 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가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

제4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, 협약 해지

1.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정하며, 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다.
2. 협약 기간 중 협력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5조 기타

양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1.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월 21일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

원장 조인성

조인성



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
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

회장 조승연

조승연